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2013년 4월 pp.199~213
한국세무학회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

심충진**

— <요 약> —

동 연구는 소득과세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세제도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는 각 소득구간이 증가될수록 한계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경우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체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응능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과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부담 보다 높아야 할 것이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 대상금액도 4인 가족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경우 수입규모별 법인세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법인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15%부터 39%까지 8단계)과 같이 세율구조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 사내 유보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역진성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면세대상품목을 경감세율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고가의 소비재화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응능과세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재산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 논리에 경도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추세를 반전시켜 보다 응능과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응능과세원칙, 한계세율, 세율구조, 탄력세율

* 이 논문은 2012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이며,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2012.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jshim@konkuk.ac.kr, 02-2049-6049

논문접수일 2012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3일

I. 서 론

응능과세원칙이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응능과세원칙이 달성되면 공평과세도 달성될 수 있다.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이 많은 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이동식 2004)에 의하면 응능과세원칙은 헌법적 이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학적 측면에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박훈 2012)도 있다. 응능과세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세의 세율구조를 다계층화할 필요가 있으며, 생필품에 대한 영세율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김유찬 2010)도 있다. 응능과세원칙과 조세평등원칙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 원칙으로 병존할 필요가 있지만, 응능과세원칙을 조세법 영역 전체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김응희 2012).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는 응능과세의 원칙을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응능과세원칙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세제도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 전제를 생각해 보면,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득과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과세 뿐만 아니라 소비과세, 재산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측면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적인 측면 이외에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개인소득과세, 법인소득과세, 소비과세, 그 외 재산과세 및 국제경제환경과 응능과세원칙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개인소득과세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법인소득과세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소비과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Ⅵ장에서는 재산과세 및 국제경제환경 측면에서 나아가 방향을 간략히 기술하며 제Ⅶ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응능과세원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식(2004)은 응능과세원칙이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포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응능과세원칙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응하게 세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평등원칙과 결부되지만 그 외 과잉금지, 결혼과 가족제도보호 그리고 사회국가 원리와 같은 헌법적 이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찬(2009)은 경제의 글로벌화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다수 가진 나라들에게 경제성장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세계경제에 또한 많은 리스크(부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들이 조세부담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심정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은 경험적으로 볼 때 응능과세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이라고 한다.

김유찬(2010)은 소비세 분야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비세의 세율구조의 다계층화,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생필품에 대한 영세율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소비세 구조를 잘 디자인한다면 최소한 직접세 분야에서 방치되고 있는 응능과세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세율을 제공하기에 그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면세제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훈(2012)은 법학측면의 응능과세원칙과 조세제도의 평가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응능과세가 법학측면에서는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변칙증여 과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배당소득과 증여세 등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과세확립과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전면과세도 주장하고 있다.

김용희(2012)는 조세법상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응능과세원칙과 조세평등원칙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의 원칙으로 병존할 필요가 있지만 응능과세원칙을 조세법 영역 전체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담세능력에 따라야 하는 과세의 원칙이 실제로 조세입법자의 자의적 결정에 맡겨진다면 응능부담의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 원리에 불과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 전체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Ⅲ. 개인소득과세와 응능과세원칙

1. 현행 종합소득세율과 한계세율

가. 현행 세율구조

개인소득과세 중 응능과세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현행 세율구조가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5단계(6%, 15%, 24%, 35%, 38%)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이 일정구간을 초과할 경우 증가되는 세율이 4단계까지는 9% point씩 증가하다가 마지막 5단계(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서는 3% point만 증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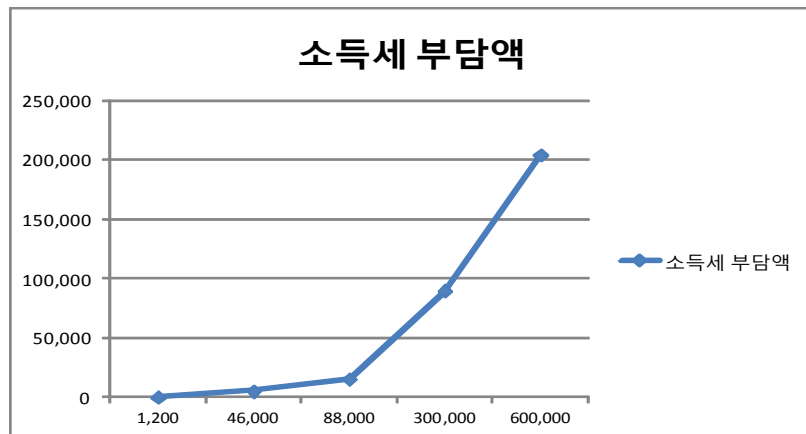
능력설에 의한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어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다. 현행 세율구조하에서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과세표준과 한계 조세부담률

과세표준	소득세 부담액	한계 조세부담률(율)
1,200만원	720,000원	—
4,600만원	5,820,000원	5,100,000원(15%)
8,800만원	15,900,000원	10,080,000원(24%)
3억원	90,100,000원	74,200,000원(35%)
6억원	204,100,000원	114,000,000원(38%)

〈그림 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부담액

(단위 : 천원)



현재의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하에서는 위 <그림 1>과 같이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한계세율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 일정 소득규모 구간을 넘을 때 한계세율체감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소득창출의 유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종합소득세율의 개선방안

현행 종합소득세율의 구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이 증가하여 소득의 증가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계세율은 10% 세율부터 시작해 소득이 일정구간 초과할 때 마다 한계세율이 5%, 10%, 3%, 5%, 2% point씩 증가하는 6단계 구조로 되어있다.¹⁾ 즉, 우리나라의 세율구조와 달리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격한 한계세율의 증가보다는 증가폭을 일정수준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하면서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종합소득세율의 구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계세율도 일률적으로 9% point 증가하기 보다는 응능과세원칙과 납세순응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계세율의 증가폭을 증가, 감소하는 형태의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개인 소득원천별 소득과 응능과세원칙

가. 현행 규정

개인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발생한 소득은 모두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응능과세원칙은 세부담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분류과세에 의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있다. 이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그 무게를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응능과세원칙은 공평과세를 달성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능과세원칙에서 볼 때 소득원천별로 소득의 무게를 달리

1) <미국> Status—Single

- 10% on taxable income from \$ 0 to \$ 8,500, plus
- 15% on taxable income over \$ 8,500 to \$ 34,500, plus
- 25% on taxable income over \$ 34,500 to \$ 83,600, plus
- 28% on taxable income over \$ 83,600 to \$174,400, plus
- 33% on taxable income over \$174,400 to \$379,150, plus
- 35% on taxable income over \$379,150

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 중 종합소득세율을 준용하는 규정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은 개선해야 한다.

나. 개선방안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등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²⁾ 주식 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 보다는 낮아야 한다.³⁾

현행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소득세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어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려고 한다. 기준금액 3,000만원도 높다고 생각되며, 최소한 4인가족 1년간 최저 생계비용(보건복지부 2012년도 기준 17,946,600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할 필요가 있다.⁴⁾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인별 과세단위에서 미국과 같이 가족단위로까지 과세단위⁵⁾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세단위와 관련된 쟁점사항은 미국과 같이 다양한 과세단위(개인단위, 부부합산단위, 부부개별단위, 세대주단위)가 개인단위 과세보다 더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보다 가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소비단위이므로 가족 혹은 부부를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가까워 응능과세 실현에 더 적합하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합산소득을 가지는 부부의 경우 부부사이의 소득격차가 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불평등이 발생한다. 미국과 같이 합산과세를 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별과세를 하는 경우와 세율을 달리하고 또 합산과세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⁶⁾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60%이며, 2년이상 보유 등기자산의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같다.

3)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주식관련 자본이득세는 종합소득세 보다 낮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자들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되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응능과세원칙상 분리과세 보다는 종합과세를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5) 과세단위란 개인이 창출한 소득을 어떠한 단위로 종합과세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적단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주의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거가족 등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가족단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6) 해당 문장은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IV. 법인소득과세와 응능과세원칙

1. 법인소득 과세

가. 수입규모별 법인세 부담률

내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도 25.8%에서 2010년 25.9%로 큰 변화는 없다.⁷⁾ 그러나 현행 법인세율의 구조는 응능과세의 원칙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수입금액 규모별로 법인세부담률(법인세부담액/과세표준)을 분석하면, 수입금액 20억원 이하까지는 수입금액이 증가할수록 법인세부담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세부담률이 1.4% point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현행 법인세 세율구조가 너무 단순한 세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2010년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법인세부담액	법인세부담액/ 과세표준
3억 이하	1,547,011	254,335	40,209	214,126	13.8%
5억 이하	764,102	105,378	9,635	95,743	12.5%
10억 이하	1,908,026	242,143	29,651	212,492	11.1%
20억 이하	3,790,067	487,616	79,160	408,456	10.8%
50억 이하	9,216,472	1,346,203	270,417	1,075,786	11.7%
100억 이하	9,431,895	1,624,820	347,574	1,277,246	13.5%
200억 이하	9,304,840	1,789,189	422,538	1,366,651	14.7%
300억 이하	5,475,132	1,104,412	262,027	842,385	15.4%
500억 이하	6,606,752	1,350,352	303,997	1,046,355	15.8%
1,000억 이하	10,305,914	2,171,008	438,511	1,732,497	16.8%
5,000억 이하	24,791,287	5,405,971	726,476	4,679,495	18.9%
5,000억 초과	95,489,190	20,997,018	4,471,245	16,525,773	17.3%

(주)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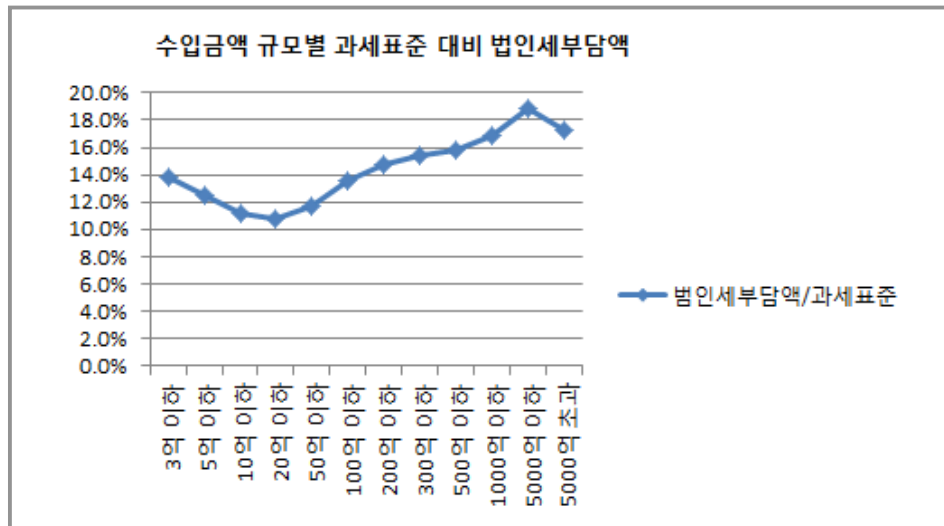
7) 2006년~2010년 내국세 대비 법인세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법인세/내국세	25.8%	26.8%	28.7%	25.8%	25.9%
법인세	29,362,229	35,417,342	39,154,491	35,251,404	37,268,222
내국세	113,879,497	132,508,138	136,556,310	136,476,881	143,506,090

(주) 국세통계연보 참조

〈그림 2〉 수입금액 규모별 과세표준 대비 법인세 부담액



나. 개선방안

<그림 2>와 같이 현행 법인세율의 체계는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행 법인세율이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세율구조(15%부터 39%까지 8단계)를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최소 3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3〉 미국의 법인세율

Taxable Income(과세표준)	Tax rates(세율)
\$ 0 — \$ 50,000	15%
\$ 50,000 — \$ 75,000	\$ 7,500 + 25% of excess over \$ 50,000
\$ 75,000 — \$ 100,000	\$ 13,750 + 34% of excess over \$ 75,000
\$ 100,000 — \$ 335,000	\$ 22,250 + 39% of excess over \$ 100,000
\$ 335,000 — \$10,000,000	\$ 113,900 + 34% of excess over \$ 335,000
\$10,000,000 — \$15,000,000	\$3,400,000 + 35% of excess over \$10,000,000
\$15,000,000 — \$18,333,333	\$5,150,000 + 38% of excess over \$15,000,000
Over \$18,333,333	Flat 35%

2.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

가. 사례를 통한 분석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할 경우 개인과 법인 간의 응능과세의 원칙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단계에서 1,000원의 과세소득에 대해 평균 15%의 법인세부담(150원)을 한다면 850원이 단순히 배당가능이익일 경우 주주들이 부담하는 한계세율에 따라 다양하게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첫째, 이익을 배당할 경우 소액주주는 14%의 분리과세(119원)를 부담하면 총 269원의 세부담이 발생하고, 총 조세부담율은 26.9%이다. 그러나 대주주일 경우는 세부담이 소액주주보다 높을 것이다.

둘째, 이익을 미배당할 경우 법인세만 부담하므로 총부담률은 15%이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1,000원의 과세소득에 대해 평균 소득세부담율은 19.80%⁸⁾이므로 198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평균 세부담에 차이가 있어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개선방안

위 사례에서 보듯이 법인이 이익을 과다 사내 유보할 경우 개인보다 너무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적용했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여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8) 다음에서 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의 평균 값임

<개인소득자 과세표준대비 산출세액>

(단위 : 백만원)

2010년	과세표준	산출세액	산출세액/과세표준
신고유형별	121,074	24,176	19.97%
자기조정자	563	111	19.72%
외부조정자	118,428	23,657	19.98%
성실신고납세자	1	—	—
간편장부자	519	103	19.85%
기준경비율	416	83	19.95%
단순경비율	642	124	19.31%
비사업자	506	98	19.37%

(주) 2011년도 국세통계연도 참조

V. 소비과세와 응능과세원칙

현행 소비과세가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소득에 역진적인 세부담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다른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보석류 등 고가의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고 있다. 현행 면세제도는 저소득자에게는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지만 고소득자에게는 역진성이 더 강하게 발생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쿠폰을 발행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기초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을 구분하지 않으며 두 가지 재화사이에 구분하여야 할 경제적 근거도 미흡하므로 가공식료품에 대해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비중을 살펴볼 때 미가공식료품보다 가공식료품의 소비비중이 소득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않으므로 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도입 또는 경감세율의 도입이 필요하다. 면세대상품목을 경감세율의 적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으면서 기존의 면세영역이 사라지게 되며 과세영역으로 통합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상호검증 기능(Cross-Check Function)을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다. 면세제도를 경감세율제도로 전환하여 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세율(10%)에서 벗어나 고가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치성 여부에 상관없이 고가의 소비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치성 고가 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을 통해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VI. 재산과세 및 국제경제환경과 응능과세

1. 재산과세와 응능과세원칙

기본적으로 재산과세를 응능과세원칙 실현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논쟁이 존재할 수 있다. 재산과세의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지역개발 등을 통해 창출된 재산 가치에 대해 정부가 재산세 등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창출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산가치의 증대는 해당 재산을 통해 소득창출 가치까지도 증가된다. 소득창출가치의 증가는 소득과세에서 흡수될 수 있으나 재산가치의 증가는 재산과세를 하지 않으면

응능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⁹⁾(2009년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라 해당 주택이나 주거용 부동산에서 다른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보유세와 다른 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응능과세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공시지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가할 경우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244만큼 증가했으나,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가할 경우 0.118만큼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시가대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세금/시가)이나 소득대비 주거용 부동산의 실효세율(세금/소득)을 검토해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에 비해 약 3배에서 4배 정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의 강화가 필요하다.

〈표 4〉 공시가격에 따른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공시지가	1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80억원	100억원
실효세율	0.130	0.322	0.474	0.605	0.718	0.836	0.923

출처 : 이영환 · 신영임(2009) 자료 재구성

〈표 5〉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구 분	지 역	대 상	시가대비 실효세율 (세금/시가)	소득대비 실효세율 (세금/소득)
이영환 · 신영임 연구	전 국	재산세 납부자	0.23~0.28	1.55~1.89
재정경제부('05)	전 국	재산세 납부자	0.17~0.52	—
기획재정부('08)	미 국	뉴 욕	0.77	5.5
기획재정부('08)	일 본	전 국	1.0	4.5
기획재정부('08)	캐나다	전국(밴쿠버)	약1.0(1.0)	(-)7.7

출처 : 이영환 · 신영임(2009) 자료 재구성

2. 국제경제환경과 응능과세원칙

글로벌 경제화에서 현행 자본소득 과세가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들의 자본시장의 통합도(Integration Grade)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들 간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경쟁은 가열되는 추세에 있다. 하

9) 계산식은 이영환 · 신영임(2009) p.142에 기술되어 있으며 Richard Almy(2001), 이영희(2007), Jones, et al.(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지만 자본소득의 비과세나 경과세가 필요할 정도로 자본시장은 통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화에서 자본소득의 탈세방지를 위해 국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이 극복될 여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회피의 문제는 세율이 0%인 경우이나 그 동기를 완전하게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경제의 글로벌화 논리에 경도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추세를 반전시켜서 보다 응능과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소득과세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능과세원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응능과세원칙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를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가 각 구간이 증가될수록 한계세율도 체증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 한계세율체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세율체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크기가 같을 경우 세부담의 크기는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응능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과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무게를 달리해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부담 보다 높아야 할 것이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은 4인가족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법인의 경우 수입규모별 법인세 부담률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고소득 법인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과 같이 세율구조(15%부터 39%까지 8단계)를 세분화해야 한다. 사내 유보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될 것이다.

면세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역진성을 더 강하게 발생시키므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면세대상품을 경감세율의 적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가의 소비재화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대비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의 비율을 보면 공시지가가 높은 구간에서 공시지가

의 증가율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미국, 일본 및 캐나다에 비해 주거용 부동산의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산과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의 글로벌화 논리에 경도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추세를 반전시켜서 보다 응능과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세목에 집중되지 않고 소득, 소비, 재산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각 세목별 세부적인 효과분석 등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응희. 2012. 조세법상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 토론회 : 33-66.
- 김유찬. 2010. 소비세 분야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실현. 조세학술논문집. 제26집 제1호 : 116-143.
- _____. 2009. 글로벌 경제 환경하에서 응능과세원칙 실현의 제약과 가능성. 질서경제저널. 제12권 제3호 : 21-42.
- 박 훈. 2012. 법학측면의 응능과세원칙과 조세제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 토론회 : 101-122.
- 이동식. 2004. 응능과세원칙.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 616-640.
- _____. 2010.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 545-570
- 이영환 · 신영임. 2009.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세무와회 계저널. 제10권 제2호 : 139-170.
- 이영희. 2007. 부동산 보유과세 세부담의 공정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70호). 2007.9 : 157-177
- Jones, Randall S. and Tadashi Yokoyama. 2008. *Reforming Housing and Regional Policies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613. OECD, Paris.
- Richard Almy. 2001. *A Survery of property tax system in Europe*. Department of Taxes and Customs of the ministry of Finance in Republic of Slovenia.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nd Korean Tax System

Chung—Jin Shim*

〈Abstract〉

This study show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tax system, including not only income taxation and consumption taxation, but also property taxation, what must be done in order to realize the ability to pay principles of taxation. The existing Korean comprehensive income tax rate has a structure of a higher marginal tax rate for each higher income brackets and consequently it reduces compliance degree of taxpayer. So it needs to be adjuste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s generally for fairness, in this respect speculation income and other general income must be treated with different tax rate schemes. Income Tax rate for transfer gain of real estate must be higher than that for the other kinds of income. And the cut line of applying comprehensive taxation for financial income must be also lowered to the level of yearly minimum living cost of a 4 headed family. Analysis results about corporate income tax burden shows that high—income corporate has a relatively low tax burden. Insofar Korea also better applies structure of multiple tax rate as USA (15—39% tax rate structure). Analysis also shows, corporations of a higher reserve volumes bear a lower tax burden than individuals. So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tax for high reserve. VAT exemption allows sometimes regressiveness of taxation, the government can better issue coupons for basic goods and switch tax—exemption system into low—rate system. By applying the higher tax rate for expensive consumption goods the regressiveness of the system can be mitigated. Analysis about the effective tax rate of housing property in foreign countries shows that we need to strengthen the property taxation. Tax burden for capital income was declined too strong in Korea as well as overall in the world in last 20 years driven by economic globalization and it is now the time of turn—around.

〈Key words〉 ability to pay principles of taxation, marginal tax rate, tax rate structure, flexible tax rate

*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